

**2018년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신규지원 대상과제(기획과제)  
공모안내**

2018. 1. 24.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 목 차

I. 개요 .....	1
II. 공모내용 .....	4
III. 신청요건 및 방법 .....	11
IV. 평가방법 및 관리 .....	22
[별첨 1] 2018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32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42

## I . 개요

---

---

**■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관리규정 제6조

**■ 목적**

- 「정신건강종합대책」(’16.2월) 정책목표인 자살예방 이행, 국정 과제[44]의 목표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 자살률 감소의 국가적 대응을 위해 자살고위험군 병원기반 사례관리서비스 및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의 인증체계를 개발하여 자살예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기에 기획과제로 추진함

**■ 지원대상**

- 사업단의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으로 산·학·연,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주관연구책임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가능(3책5공에 산입되지 않음)



## Ⅱ. 공모내용

---

---

# 1

## 자살고위험군(시도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기획과제)

### ■ 지원목적

- 자살고위험군(시도자 포함)인 정신과 입퇴원 환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

### ■ 지원내용

No	지원과제	지원목적	지원규모 및 기간
1	자살고위험군(시도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	자살고위험군(시도자 포함)인 정신과 입퇴원 환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	연 0.5억 원 내외, 12개월 이내 (지원과제 1건)

※ 연구기간: 협약일 ~ 2019. 6. 30.(단, 신규과제의 평가결과 및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사업단의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으로 산·학·연,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 지원규모

- 연 0.5억 원 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 자료 제출)
- 본 과제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결과물은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 다학제적 연구팀 구성

- 연구계획서 제출 시 소속 기관별 **IRB** 승인 필수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사업단장의 소유로 함

※ 지원과제 특기사항은 제안요청서(RFP) 참고

## ■ '자살고위험군(시도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자살고위험군(시도자)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
지원규모 및 기간	0.5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지원
<p>▶ 지원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고위험군(시도자 포함)인 정신과 입퇴원 환자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개발</li> </ul>	
<p>▶ 최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고위험군(시도자 포함)의 사후관리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서비스 모형 개발</li> <li>○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 지침 개발</li> </ul>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과 입퇴원 환자 중 자살고위험군(시도자 포함)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 모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Action-J 등 해외사례 조사 및 사후관리 건강보험서비스 제공사례 분석</li> <li>- 적용 가능한 근거중심 프로그램 제시(가족교육, 위기상담, 일상생활적응훈련 등)</li> <li>- 의료보험 적용을 통한 병원기반 자살예방 사업 확대에 따른 기대효과 제시</li> </ul> </li> <li>○ 정신과 입퇴원 환자 중 자살고위험군(시도자 포함)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관리자의 자격요건, 적정인력과 수가, 업무지침(연계서비스 목록 포함), 의무기록서식 등</li> <li>- 사례관리자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내용</li> </ul> </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의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으로 산·학·연,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li> </ul>	
<p>▶ 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li> <l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li> <li>○ 본 과제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결과물은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li> <li>○ 연구계획서 제출 시 각 기관별 IRB 승인 필수</li> <li>○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사업단장의 소유로 함</li> </ul>	

### ■ 지원목적

-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예측 모형을 토대로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인증체계 개발

### ■ 지원내용

No	지원과제	지원목적	지원규모 및 기간
1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효과예측 및 인증체계 개발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예측 모형을 토대로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인증체계 개발	연 0.5억 원 내외, 12개월 이내 (지원과제 1건)

※ 연구기간: 협약일 ~ 2019. 6. 30.(단, 신규과제의 평가결과 및 심의결과 등에 따라 지원규모 및 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대상

- 사업단의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으로 산·학·연,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 지원규모

- 연 0.5억 원 이내, 12개월 이내 지원

### ■ 특기사항

-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
-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
- 본 과제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결과물은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
- 다학제적 연구팀 구성

-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경험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권장
- 연구계획서 제출 시 소속 기관별 **IRB** 승인 필수
-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사업단장의 소유로 함

※ 지원과제 특기사항은 제안요청서(RFP) 참고

## ■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효과예측 및 인증체계 개발'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효과예측 및 인증체계 개발
지원규모 및 기간	0.5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지원
<p>▶ 지원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예측 모형을 토대로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인증체계 개발</li> </ul>	
<p>▶ 최종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의 효과예측 모형개발</li> <li>○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체계 개발</li> </ul>	
<p>▶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현황 분석 및 효과예측 모형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우수 사례 분석</li> <li>- 2014년-2017년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 현황 조사 및 분석(활용/보급 내역 포함)</li> <li>- 2014년-2017년 자살예방 인증 프로그램의 효과예측 모형개발</li> <li>-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예측 모형개발</li> </ul> </li> <li>○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인증체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예측 모형에 기반한 인증체계 개선안 도출</li> <li>- 근거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제시</li> </ul> </li> </ul>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단의 과제공모를 통해 선정된 연구기관으로 산·학·연, 의료법상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li> </ul>	
<p>▶ 특기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정 후 Kick-off 회의 시 분야의 범위 구체화·조정 가능</li> <li>○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반영(최종보고서 제출 시 증빙자료 제출)</li> <li>○ 본 과제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로 발생하는 모든 문서 및 결과물은 사업단에 제출해야 함</li> <li>○ 다학제적 연구팀 구성</li> <li>○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 연구 경험자를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권장</li> <li>○ 연구계획서 제출 시 소속 기관별 IRB 승인 필수</li> <li>○ 연구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대한민국 또는 사업단장의 소유로 함</li> </ul>	

### Ⅲ. 신청요건 및 방법

---

---

##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 연구기관의 자격(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3조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주관/세부/위탁 연구책임자 자격

- 해당사업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 인력이어야 함
- 비정규 인력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할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임용

계약기간은 반드시 전체연구기간인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의 임면권자(대학총장, 대표이사 등)가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제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과제구성요건 및 가산점 부여

### ■ 세부과제 구성요건

- 각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를 참고하여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 가능)
  - ※ “위탁과제”라 함은 주관 및 세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분(임상시험, 통계분석 등)을 용역 받아 수행하는 과제임. 위탁연구기관은 추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없음

## 3) 참여 및 신청 제한

### ■ 연구개시 예정일 : 2018년 7월 초

※ 해당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참여제한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

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인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확인하며, 필요시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중복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 신청제한

○ 현재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와 상관없이 참여

- 본 기획연구는 3책5공에 산입되지 않음

## ■ 신청 전 숙지 사항

○ 연구자는 '제안요청서(RFP)', 공모안내서의 'Ⅲ. 신청요건 및 방법', 'Ⅳ. 평가방법 및 관리'의 내용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과제신청 마감 이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함

○ 사업단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성실한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관련문서의 제출을 협약 시 요구할 수 있음

○ 위탁정산실시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사업단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 회계감사비용 사항

① 연구개발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② 단계별 적용: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 4) 연구개발정보의 등록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보고·공개

### ■ 9대 연구 성과물의 등록 및 기탁

○ 국가 R&D사업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 관련법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13항

○ 각 연구성과물이 발생할 때에는, 아래의 해당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 기관'의 담당부서와 사전확인 후, 자원활용이 가능한 성과물을 등록·기탁하여야 함

- 다만,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의 경우 연구자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에 등록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담기관으로 등록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현황>**

구분	연구성과물	전담기관	관리대상(등록·기탁 기준)	
등록	논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a href="https://rpms.kisti.re.kr">https://rpms.kisti.re.kr</a> , 042-869-1895)	국내외 학술단체 및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한국지식재산전략원 ( <a href="http://sims.ntis.go.kr">http://sims.ntis.go.kr</a> , 02-3287-4354)	국내외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a href="https://nrms.kisti.re.kr">https://nrms.kisti.re.kr</a> , 042-869-1665)	연구개발 종료 시 제출하는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전자원문 포함)	
	연구시설·장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a href="http://nfec.ntis.go.kr">http://nfec.ntis.go.kr</a> , 042-865-397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취득한 장비 중 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	
	기술요약정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a href="https://www.ntb.kr">https://www.ntb.kr</a> , 042-865-3481)	기초·응용·개발단계 등의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가 완료된 결과물의 기술정보를 요약하여 공유·활용(기술이전, 사업화 등)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기록정보	
	생물자원*	생명정보(정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a href="http://biodata.kr">http://biodata.kr</a> , 042-879-8534)	유전체 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질 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 정보(유전자 칩, 단백질 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신품종**(정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a href="https://www.bris.go.kr">https://www.bris.go.kr</a> , 044-861-8743)	생명정보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에 관한 정보
	소프트웨어		한국저작권위원회 ( <a href="https://www.cros.or.kr">https://www.cros.or.kr</a> , 1800-5455)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a href="https://www.swbank.kr">https://www.swbank.kr</a> , 043-931-5320)				
기탁	생물자원(실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a href="http://bioproduct.kribb.re.kr">http://bioproduct.kribb.re.kr</a> , 063-570-5602)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사람·동물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 <a href="http://www.kbn.cdc.go.kr">www.kbn.cdc.go.kr</a> , 043-719-6525)	인체구성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 역학정보, 임상정보, 유전정보 등의 정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a href="http://www.nccp.cdc.go.kr">www.nccp.cdc.go.kr</a> , 043-719-6670)	병원체자원(사람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원충 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실험동물자원과 ( <a href="http://www.nifds.go.kr">www.nifds.go.kr</a> , 043-719-5507)	실험동물자원(전자 조작 등을 통하여 연구를 목적으로 만든 실험동물)	
	신품종**(실물)	농업유전자원센터 ( <a href="http://www.genebank.go.kr">http://www.genebank.go.kr</a> , 063-238-4809)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정보	
화합물	한국화학연구원 ( <a href="http://www.chembank.org">http://www.chembank.org</a> , 042-860-7190)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 \* 생명자원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자원법) 제11조에 따라 범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으로 하되, 생명자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생명자원법 제8조에 의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탁등록 보존기관에 생명자원의 정보와 실물을 등록 기탁
- \*\*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6조(품종보호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고, 국립종자원 및 외국의 종자등록기관에 출원 또는 등록된 품종

## ■ 임상연구정보 CRIS(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등록

- 등록대상: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서 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는 코호트 등의 관찰연구 및 중재연구(임상시험) 등 모든 종류의 임상연구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임상연구 성과정보의 내실화 및 국내 임상연구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구축된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지원과제와 관련된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CRIS 관련문의 : 043-719-8662 / [criskorea@korea.kr](mailto:criskorea@korea.kr)

- 성과보고시 임상연구 성과는 CRIS 등록 승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을 포함한 임상연구에 대한 온라인 등록시스템으로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음
- 2010년 5월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ICTRP)에 국가대표등록시스템(Primary Registry)으로 가입함에 따라, CRIS등록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본인의 연구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국제학술지에서 요구하는 등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

### ※ 정보등록 시 유의사항

- 등록시점: 첫 피험자 모집 전에 사전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임상시험 및 임상연구도 등록이 가능
- 등록권한: 회원가입 후, 등록권한 신청 및 승인절차를 거쳐 등록 가능
- 임상연구정보 갱신: 임상연구를 등록한 사용자는 등록된 연구의 종료 시점까지 매 6개월마다 연구정보를 갱신하여야 함

## 5) 생명윤리법 개정에 따른 IRB 심의 의무화

###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연구 시작 전에 연구대상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연구방법의 적정성 등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설치하는 심의기구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13년 2월 시행)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을 수행하는 교육기관,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수행시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함

※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 시 연구 수행기관의 IRB 심의 의무화

## ■ 생명윤리법 주요내용

- (법 적용범위 확대) 기존 생명과학기술로 한정되어 있는 생명윤리 적용 범위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전체로 확대
  - (인간대상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①물리적으로 개입, ②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연구, ③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생명윤리법」 제2조제1호)
  -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동법 제2조제12호)
    - ※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동법 제2조제11호)
- (IRB 역할 강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전 IRB 심의를 의무화하고, 해당 기관에 IRB 설치·운영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공용IRB) IRB 설치가 어려운 개인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근거 마련
- (IRB 심의대상 연구의 범위)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체유래물(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배아줄기세포주 등 포함)을 사용하는 연구\*만 IRB의 심의 대상
  - ※ 연구(Research)란 일반화할 수 있는 지식을 발전시키거나 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연구개발 및 시험, 평가를 포함한 체계적인 조사를 의미(美 연방법 HIPA, 연방규정 45CFR46 등)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 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연구에 해당하지 않음

## ■ 준수 사항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 하는 연구자는 해당 연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 생명윤리법 관련 연구 수행기관의 IRB 설치 및 등록 의무화
  - IRB 설치가 어려운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IRB\*와 협약을 통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의사항이나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자세한 내용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http://irb.or.kr\(irb@nibp.kr\)](http://irb.or.kr(irb@nibp.kr))'로 문의

## 1)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http://www.htdream.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업로드
  - 2018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기획과제)
- 제안요청서(RFP)별 특기사항에 명시된 서류 등은 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책임자의 성과실적 등 지원 자격을 증빙하는 첨부서류는 반드시 연구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첨부서류 리스트는 전산입력 시 전산입력화면에서 해당 사항 체크
  - ※ 체크한 첨부서류 리스트와 제출된 서류가 다를 경우, 과제선정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2) 전산입력 안내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에 접속 후 화면 우측 상단에 “R&D지원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 ※ 과제신청은 로그인 후 ‘연구자’ 권한으로 신청 가능함
- 사전등록 및 업데이트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사전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과제신청 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정보 등록 요망
  - 연구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에 대한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정보 변경사항 존재 여부 확인 및 필요시 업데이트 요망

○ 신청절차

- 1단계: 과제명, 세부과제구성(해당시), 요약문, 연구자 인적사항, 참여 연구원, 참여기업(해당시), 연구비 등 전산입력 사항 입력
-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
- 3단계: 첨부서류 서식에 따른 내용 작성 및 hwp파일 업로드
- 4단계: 주관연구기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신청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을 별도로 제출

○ 주의사항

- 과제신청(전산입력)시 세부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각 세부과제 신청완료 후 총괄과제에서 “신청완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총괄과제가 신청완료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과제신청 완료가 불가능함

※ 접수마감일경에 전산서버에 과부하가 걸려 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마감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전산에 접속하시기를 당부 드리며, 접속장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요망

※ 사업단에서 전산입력 대행은 불가능함

### 3) 최소요구 성과지표

- 과제신청 시 연구목표는 최소요구 성과 이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연구 성과지표를 설정해야 함

### 4) 연구비 산정

-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별첨1.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 시 삭감하여 지원함

- 참여기업부담금

- 연구지원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5) 제출서류 및 기한

### ○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
  -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 계획서」 10부**
- 연구책임자의 성과실적 등 지원 자격을 증빙하는 첨부서류 등

###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산입력 기한	계획서 우편제출 기한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또는 공문접수) 완료 기한
2018. 2. 23.(금) 14:00	2018. 2. 23.(금) 14:00	2018. 2. 23.(금) 14:00

※ 전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접수(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및 신청 불가)

※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불인정함

### ○ 접수방법: 전자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 서류의 접수는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127(중곡동) 국립정신건강센터 10층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 (연구기획과) (☎04933)

접수·평가 관련: 02-2204-0376, 0380

F A X: 02-2204-0393

## IV. 평가방법 및 관리

---

---

### 1) 사업단의 사전선별심사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해당 첨부서류 목록, 기획과제 부합성 등 검토
- 사전선별 심사 후 평가대상 과제 결정(사업단 사전선별 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기회 부여하나, 자료요구 마감일 이후에 제출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탈락 처리됨)

### 2) 구두평가

- 1단계 평가로 진행하며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구두발표 후 평가

### 3) 평가점수 계산 방식

- 평가점수는 최고점 1개와 최저점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5명 이하로 구성될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지 않음

### 4) 주요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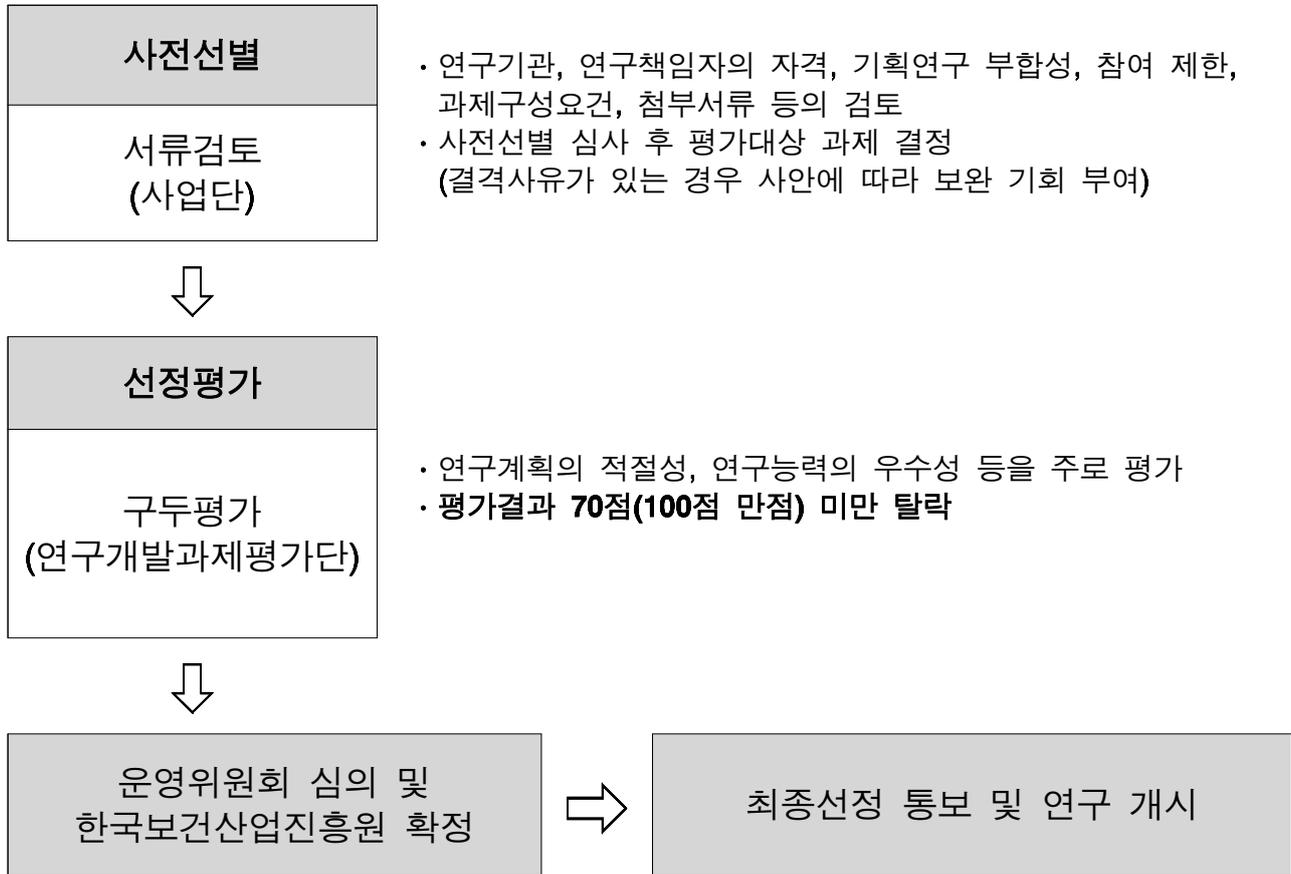
- 연구계획의 적절성, 연구능력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능력

### 5) 기타사항

- 기타 평가에 대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사업 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평가지침」을 준용

## 2

## 평가절차



## 1) 협약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 때, 반드시 사업단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단에 승인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 ■ 연구기관 변경

- 주관연구기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소형개발연구인 경우에만 사업단에 승인 요청 가능함. 이 경우 다른 연구책임자로의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 세부/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업단에 승인요청 가능

## 2) 과제관리

### ■ 착수 회의(Kick-off 회의)

- 주관연구책임자는 협약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착수회의를 개최 하여 향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발표
- 담당 공무원, 사업단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착수회의에 참가 하여 RFP에 부합하는 연구계획 및 연구비 사용 계획 검토

## ■ 중간보고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요연구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연구수행기간의 1/2이 되는 시점까지)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진도점검 발표 시행
- 담당 공무원, 사업단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중간보고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향후 계획 등 검토

## ■ 최종보고서 검독회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기간 종료 시점에서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및 검독회 개최 후 건의된 수정사항 보완·반영
- 담당 공무원, 사업단 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등은 최종보고서 검독회에 참가하여 RFP 부합도, 목표달성도, 중간보고서 검독회 시 건의된 수정사항 이행도 등 검토

## ■ 최종보고서 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10부를 사업단장에게 제출함
- 사업단은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해 평가를 시행함

## ■ 기타 준수사항

-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사업단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3)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 ■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 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체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중소기업·벤처기업 등 조직체계상 연구보안심의회를 운영하기 어려운 연구기관은 제외

##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 제정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보안심의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체 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수행관련 정보·연구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결과의 대외발표 시 보안조치
-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시 보안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연구기관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대해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국가안보·공익 또는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등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하여야 함

## ■ 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및 위반 시 조치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

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 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 세부적인 사고 경위를 보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 사업단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기관의 장, 사업단의 장, 유관기관의 장은 조사가 끝날 때 까지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를 수습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안관리 조치 및 보고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및 관련법규를 준용함

#### 4) 연구노트 관리

#####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노트 관리지침」 준수

- 연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소관 연구노트 관리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자체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소속 연구자에게 교육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작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와 관련한 업무의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을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함

- 연구자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소속기관이 정한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연구자는 연구노트의 원본을 소유할 수 없으며, 해당분야의 연구 활용을 위해 사본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바에 따름
  - 연구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되면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로 연구노트의 작성을 중단할 경우 해당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 그 외 연구노트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소관 연구노트 관리지침」 및 관련 법규를 준용함

## 5) 연구성과의 관리 및 평가

### ■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과제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의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시 단계별 연구 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기간 종료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 즉 논문, 특허출원 및 등록, 인력배출, 지침개발, 임상연구자원, 기타 성과물 등을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함

### ■ 연구성과활용현황의 보고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 기간이 종료된 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활용 보고서」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다음연도부터 최장 5년간 매년 사업단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작성한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또는 특허출원 /등록증 사본, 기타 시제품, 제품화 등)과 이의 활용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연구종료 후 연구성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보건복지부 연구비 지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 연구성과의 홍보

- 사업단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하여 연구발표회 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발표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성과임을 표시하여 발표하여야 하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발표할 경우에도 발표내용을 사업단과 반드시 사전협의하여야 함

※ 대중매체를 통한 발표내용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가점 불인정 등 연구비 지원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특히 연구결과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게재, 학술대회 발표, 특허 출원할 경우, 보건복지부 및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표기해야 함

### <논문/학술대회 발표>

- 국문 표기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제고유번호 예시 : HM18C1234).”
- 영문 표기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a grant of the Korean Mental Health Technology R&D Project fun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Republic of Korea(grant number: HM18C1234).”

### <특허>

- 특허 출원 시 해당 특허 창출에 기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정보\*를 기입하도록 관련법령\*\*에 의무화됨

\* 과제정보 기재항목: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고유번호(NTIS), 부처명, 연구관리기관, 연구사업명, 연구과제명, 기여율, 주관기관, 연구기간

\*\* 관련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6항, 「특허법 시행 규칙」 서식 14 특허출원서

- 연구종료 전·후 연구성과 발생(논문게재, 특허 출원·등록 등)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http://www.htdream.kr))에 수시 입력함

본 계획에 기술되어 있지 않은 기타 연구사업의 운영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단 관리규정」 및 이에 따른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추진함

# 【별첨 1】 2018년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인건비	<p><b>【사용용도】</b></p> <p>○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p> <p>《인건비 정의》</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의</th> </tr> </thead> <tbody> <tr> <td>내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ul> </td> </tr> <tr> <td>외부 인건비</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li> <li>-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li> <li>-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li> </ul> </li> <li>●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li> </ul> </td> </tr> </tbody> </table> <p><b>【계상기준】</b></p> <p>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을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 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인건비 산정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세부산정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li> <li>*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li> </ul> </li> </ul> </td> </tr> <tr> <td>기타기관</td> <td>●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td> </tr> </tbody> </table> <p>※“해당 과제 참여율”</p> <p>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p>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ul>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li> <li>-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li> <li>-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li> </ul> </li> <li>●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li> </ul>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li> <li>*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li> </ul> </li> </ul>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ul>													
외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li> <li>-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li> <li>-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li> </ul> </li> <li>●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해야 하며, 개인별 직급 및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 규모가 결정</li> </ul>													
구분	세부산정내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총액* × 참여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급여총액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의 직접비 중 연구수당, 간접비 중 연구개발능력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은 제외</li> <li>*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li> </ul> </li> </ul>													
기타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기준액 × 참여율													

직접비	① 인건비	<p>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p> <p>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됨</p> <p>※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연구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함</p> <p>3.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p> <p>※ 참여연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연구수행기관에서 과제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함</p> <p>※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퍼센트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 (미지급인건비 계상)</p> <p>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p> <p>가. 보건복지부 산하 정부출연기관</p> <p>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p> <p>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라.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p> <p>마.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에 소속된 연구원인 경우</p> <p>※ 연구중심병원 인건비 허용기준 참조</p>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p> <p>사.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p> <p><b>【참고사항】</b></p> <p>○ 사업단 사전승인 사항 :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을 해당 중소기업 소속의 다른 신규 채용 연구원으로 변경하려는 경우</p> <p>○ 인건비 현물 산정기준 : 수행기관 급여기준 × 참여율</p> <p>○ 참여연구원 변경 : 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을 변경하는 경우 「협약 변경 처리기준」 붙임 8, 9의 서식을 활용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관련 문서를</p>
-----	----------	---

		<p>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 다만,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받는 연구과제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참여연구원 변경에 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당월 인건비 지급전까지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연구원 변경내역을 등록·관리하고, 관련 문서를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할 경우에만 인정.</p> <p><b>【불인정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하였거나 미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li> <li>○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li> <li>○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li> </ul>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p><b>【사용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 연구원(리서치 펠로우 포함)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li>○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li>○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li> </ul> <p><b>【계상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li> </ul> </li> <li>○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한 아래의 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학사과정 : 월 1,000천원</li> <li>② 석사과정 : 월 1,800천원</li> <li>③ 박사과정 : 월 2,500천원</li> <li>④ 박사후 연구원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li> </ul> </li> <li>※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li> <li>※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 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li> </ul> <p><b>【참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 필수 이행사항 :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 확인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참고5의 서식을 활용하여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정산시 제출</li> </ul>
		<p><b>【사용용도】</b></p> <p>1. 연구시설·장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당해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설치)완료)되어 해당연구에</p>

직접비	③ 연구 장비 · 재료비	<p>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이고,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조성비 및 해당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기획·설계·건설·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 사업관리 관련 비용 등 포함)</p> <p><b>2. 재료비·전산처리비</b>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p> <p><b>3. 시제품 제작비</b>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p> <p><b>【계상기준】</b></p> <p>○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b>【참고사항】</b></p> <p>○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이상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는 구축타당성 검토를 위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심의 진행</p> <p>※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p> <p>○ 3천만원 이하(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의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집행가능하나 집행시 해당과제와의 합목적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자료(기관 결재문서 등) 비치할 것</p> <p>○ 해당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이거나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ntis.go.kr)에 등록·관리(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관리강화)</p> <p>※ 정산 시 해당 연구장비의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 등록증」 첨부</p> <p>○ <b>사업단 사전승인 사항</b> :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변경하거나 구매하려는 경우, 원래계획과 다르게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아니하려는 경우</p> <p>※ 당해연도 해당과제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 진흥원장의 승인 및 과제종료 2개월 전 구입과 설치 완료</p> <p>○ <b>현물 산정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 구입한지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당해연도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li> <li>-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li> <li>- 생산·판매중인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li> </ul> <p><b>【불인정 사항】</b></p> <p>○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등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p>
-----	---------------------------	---

	<p>③ 연구 장비 · 재료비</p>	<p>직전 혹은 종료 후 도착한 경우 포함)          ※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음연도에 실제 사용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          ○ 기관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 해당과제의 연구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 및 합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 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 개인용 컴퓨터 구입의 경우 비영리기관은 자체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인정하며, 영리기관은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현물부담액 부족한 경우</p>
<p>직접비</p>	<p>④ 연구 활동비</p>	<p><b>【사용용도】</b></p> <p>1. 국외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위탁정산수수료 포함)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로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 부서를 의미함          4. 시험분석·임상시험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보건의료분야 임상시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속과제의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모집 광고료, 임상시험 보험료는 해당과제의 최종연도(단계 최종연도 포함) 종료일내에서 계약 가능          5. 과제관리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비 등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제외)</p> <p><b>【계상기준】</b></p> <p>○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직접비	<p>④ 연구 활동비</p>	<p>○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p> <p>※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p> <p>※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p> <p>○ 위탁정산 수수료 (주관세부과제만 계상) - 연구개발비 규모(협약시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p> <table border="1" data-bbox="459 645 1412 958"> <thead> <tr>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h>연구개발비 규모</th> <th>정산수수료</th> </tr> </thead> <tbody> <tr> <td>0.5억 미만</td> <td>440천원</td> <td>5억 이상 10억 미만</td> <td>944천원</td> </tr> <tr> <td>0.5억 이상 1억 미만</td> <td>484천원</td> <td>10억 이상 20억 미만</td> <td>1,185천원</td> </tr> <tr> <td>1억 이상 2억 미만</td> <td>545천원</td> <td>20억 이상 30억 미만</td> <td>1,304천원</td> </tr> <tr> <td>2억 이상 3억 미만</td> <td>654천원</td> <td>30억 이상 50억 미만</td> <td>1,435천원</td> </tr> <tr> <td>3억 이상 5억 미만</td> <td>800천원</td> <td>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td> <td>22천원 증액</td> </tr> </tbody> </table> <p>※ 연구개발비 이월과제의 경우 협약액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세부과제(위탁과제 제외)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세부) 1과제 : 가산금 없음          - 세부 1개기관(과제) 추가시 정산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사업단의 경우 총괄과제별로 정산수수료 책정하고 세부과제수에 따른 가산금 책정</p> <p>○ 공공요금은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분을 계산하여 계상</p> <p><b>【불인정 사항】</b></p> <p>○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주관, 세부, 위탁포함) 및 소속기관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p>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440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944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484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185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545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30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654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43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800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2천원 증액																							
<p>⑤ 연구 과제 추진비</p>	<p><b>【사용용도】</b></p> <p>1. <b>국내여비</b>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p> <p>2. <b>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b>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함</p> <p>3. <b>회의비</b> :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p> <p>4. <b>연구과제 수행식대</b>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식대)</p> <p><b>【계상기준】</b></p> <p>○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p>																									

	<p>⑤ 연구 과제 추진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함</li> <li>※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li> <li>※ 그 외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li> </ul> <p><b>【불인정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식대</li> <li>○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b>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b></li> <li>○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li> <li>○ 연구과제 수행식대 중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한 금액</li> </ul>
직접비	<p>⑥ 연구 수당</p>	<p><b>【사용용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li> </ul> <p><b>【계상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li> </ul> <p><b>【참고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 연구수당의 증액은 불인정(당초예산 준용)하며, 감액한 경우는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불인정</li> <li>○ 지급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사전에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li> </ul> </li> </ul> <p><b>【불인정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li> <li>○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li> <li>○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원이 연구책임자 1인 경우 제외)</li> <li>○ 인건비가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li> <li>○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li> </ul>

직접비	7 위탁 연구 개발비	<p><b>【사용용도】</b></p> <p>○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p> <p><b>【계상기준】</b></p> <p>○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인건비는 미지급인건비 제외)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p> <p><b>【참고사항】</b></p> <p>○ 사업단 사전승인 사항 : 원래계획 보다 20퍼센트 이상 늘리려는 경우      ※ 사전승인 사항 이외의 경우에도 위탁연구개발비 변경 시에는 「협약변경 처리기준」 붙임 6의 서식을 작성하여 진흥원에 보고</p> <p><b>【불인정 사항】</b></p> <p>○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40%초과 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사전승인의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p>
간접비	8 간접비	<p><b>【사용용도】</b></p> <p>1. 인력지원비</p> <p>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p> <p>나. 연구개발능력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세부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력성과급</p> <p>2. 연구지원비</p> <p>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p> <p>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p> <p>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p> <p>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p> <p>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 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p> <p>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p>

<p>간접비</p>	<p>⑧ 간접비</p>	<p>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p> <p>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1억원 이상의 공동 연구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p> <p><b>3. 성과활용지원비</b></p> <p>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p> <p>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p> <p>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p> <p><b>【계상기준】</b></p> <p>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p> <p>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퍼센트까지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p> <p>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p> <p>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p> <p>4.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p>5.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p>
------------	------------------	--

간접비	⑧ 간접비	<p>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p> <p>6.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른 금액으로 계상한다.</p> <p>7. 1억원 이상의 공동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p> <p><b>【참고사항】</b></p> <p>○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경우 기관 명의로 하며 연구개발과제별 고유번호, 보건복지부 지원 사실, 연구개발과제명의 기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p> <p><b>【불인정 사항】</b></p> <p>○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p> <p>○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p> <p>○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p> <p>※ 영리기관은 정산 실시</p>
-----	----------	--

### ※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 대해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 【별첨 2】 협약 시 제출서류 목록

○ ‘과제선정 후’ 해당하는 경우에 각 1부씩 첨부함

제출서류	유의 사항
정부출연금 수령용 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페이지 사본</li> <li>• 영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신규 개설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용 특약계좌 사본</li> <li>※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업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부담금 중 현금확인서류</li> <li>• 특약계좌 개설 확인서 (세부·위탁기관이 영리일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및 기업이외의 부담금 모두 해당함</li> <li>•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연구비 관리계좌에 부담금 100%를 입금하고 주관연구기관은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통장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제출</li> <li>• 세부·위탁기관 중 영리기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기관의 특약계좌 개설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함</li> <li>※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업로드</li> </ul>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또는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업단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협약체결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함)